한동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

2023. 6

한동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

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 (2023년 2학기)

1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란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기업(관)에서 <u>최저임금이상</u>으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으로, 이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재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,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(**직무체험형 / 채용연계형**)

※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진행하시는 기업(관)에서는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목 적

-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실무능력 배양,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의 산학협력 강화
- 목표한 직무가 본인의 적성과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한 사전 직무 배양
-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통한 취업 경쟁력 고취 및 취업률 제고
- 3.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기간, 실습가능기간

학기	모집기간 기업(기관)	실습기간
2023-2학기	2023. 06. 19(월)~2023. 07. 02(일)	2023. 08. 28(월) ~ 2023. 12. 15(금) (최소 14주 ~ 최대 16주)

- ※ 2023-2학기 현장실습학기제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- 4.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기업(기관) 요건
 - 가.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
 - 나. 학생의 보건•위생,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것
 - 다.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•설비•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을 것
 - 라.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, 지도가 가능할 것
 - 마.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•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할 것
 - 바.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, 학교에서 정한 기준을 갖출 것

- 5. 현장실습학기제 제외 기업(기관)
 - 가. 직계존속 경영기업(기관), 다단계 판매업체, 보험회사(외근 영업직 제외하고는 가능) 등
 - 나. 소비•향락업체, 해당 사업장에서 실습이 불가능한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근로자 공급업체 등
 - 다. 3개월 미만의 계절적•일시적 인력수요 업체(예: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 - 라. 노사분규,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실습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
 - 마.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, 경비, 건물관리, 청소용역, 홀 서빙 등 단순노무직종
 - 바, 야간(22:00~06:00) 근무 직종
 - 사.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(기관) 및 직종
- 6.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 자격
 - 가. 2학년 수료 이상자 (다만,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)
 - 나.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
- 7.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및 취소
 - 가. 자격증 대여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
 - 나. 현장점검 시 약정된 실습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거나, 2회 이상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시
 - 다. 단순 노무업무 또는 기타 실습내용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

8. 기업(기관) 지원 요청 사항

- 가. 실습생의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
- 나. 학생에게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 부과 불가
- 다.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실습시간의 100분의 10이상이 되도록 운영(주 40시간 기준 약 4시간)
- 라. 실습지원비(최저임금이상) 지급 요청
- 마. 현장실습 사업장 내 안전교육 필수 및 실습기간 중 근태관리 철저 ※ 실습 1일차에 사업장(기관)별 학생 실습 안전교육 지도 협조 요청
- 바.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에게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 제공
- 사. 참여기업(기관)은 실습생의 재해시 재해보상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(현장실습에 대한 특례)에 따라, <u>실습생이 실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까지 가입, 1주일 이내에</u>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
- 아. 재택실습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요망 운영규정 제27조(재택실습)
- 자. 1일 8시간,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
- 차. 연장실습은 학생의 동의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

9.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신청 방법(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 사용 절차)

가. 신청 방법

- 1) 한동대학교 현장실습 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(http://internship.handong.edu)
- 2)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
- 3) 파견요청 방법

기업체 현장실습 운영 -> 현장실습생 파견요청 -> 현장실습 수요조사 신청 (정해진 기간에 신청. 학생과 면접 또는 협의 후 실습기간은 변경 가능합니다)

- 4)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) 홈페이지 업로드
- 5) 기타 안내사항 : 필요하신 경우 학생 면접도 가능하며,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외에 다른 자료 (ex, 포트폴리오)가 필요하신 경우 학생과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"[기업용] 현장실습 참여기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" 참조
- 10. 현장실습 종료 후 평가(※ 현장실습 평가 매뉴얼 : 실습종료전 안내 예정)

구 분	평 가	내 용
	① 현장실습생 출근부	- 출근부 체크 및 확인
기업(기관) 관리자	② 현장실습생 평가서	- 현장실습 참여 학생 평가
	③ 설문조사	- 기업 설문조사 작성

11. 문의: 현장실습지원센터

- 이수현 054-260-3321, sh9253@handong.edu

- 최다경 054-260-3418 love1785@handong.edu

- FAX: 054-260-1890

- 주소 : 우)37554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558 한동대학교 산학협력관 104호

12. 운영 절차 [실습기업 담당자 참고용]

12. 20 20 [20/0 000 040]					
	참여희망 기업(기관) 신청	2023/06/19 ~ 07/02			
1단계	현장실습 홈페이지-[기업현장실습운영]-[현장실습생 파견요청] 작성(온라인 신청 매뉴얼) ※ 홈페이지 주소 : http://internship.handong.edu ※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운영 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) 작성후 업로드				
2단계	참여희망 학생 신청	2023/04/24 ~ 07/02			
	I				
3단계	실습생 선발 : 면접 등을 통하여 실습생 선발	2023/06/26 ~ 07/14			
	- 기업, 학생, 대학 : 담당업무 및 실시 일정 등 협의 - 현장실습 홈페이지-[기업현장실습운영]-[현장실습관리]-[학생선발]에서 기업실습담당자가 실습생 선발(학생선발 매뉴얼 안내 예정)				
	현장실습 협약 체결	실습 첫째날			
4단계	- 기업(기관) • 학생 • 대학이 3자 협약 체결 ※ 표준 현장실습학기제(Co-op) 협약서(추후 안내 예정) 작성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회신				
	•				
5단계	현장실습 수행(2023-2학기)	2023.08.28(월) ~ 2023.12.15(금)			
	기업별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				
<u> </u>					
	현장점검, 유선 또는 서면 지도	현장실습 진행 기간 中			
6단계	대학(소속학부교수, 산학교수 및 관련 부서 직원) → 기업(기관) : 학생점검 및 담당자 면담				
1					
	종료 및 실습결과 평가	실습종료일 이내			
7단계	- 실습생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 작성(학생평가 매뉴얼 안내 예정) - 현장실습 홈페이지-[기업현장실습운영]-[현장실습관리]-[학생평가관리]에서 [출근부], [평가서], [설문조사] 작성 및 확인				